

건강가정사 자격에 대한 소고

서 종 수(대구대학교 박사과정) · 조 희 금(대구대학교 교수)

최근 다양한 가족문제의 증대로, 개인과 가족구성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회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건강가정사업을 실천하는 전문가인 건강가정사가 양성되게 되었다.

2005년 이후 건강가정사 양성교육과 정규 대학과정 및 학점은행 제도를 통하여 수많은 건강가정사가 양성되고 건강가정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와 더불어 건강가정사업 운영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활성화 되어있으나, 건강가정사업의 운영, 전달, 실천에 핵심적인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현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건강가정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건강가정사업과 같은 휴먼서비스는 종사자의 역량이 서비스의 질과 내담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같은 이유로 건강가정사와 건강가정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건강가정사 양성 교육과정과 자격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가정사는 사회복지사 자격과목과 너무 많이 중복됨으로써 건강가정사와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해 역할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대상과 서비스의 초점 및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즉, 건강가정사업은 선별적 대상이 아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특성과 더불어 대상별 접근이 아닌 한 단위로서의 가정으로 접근하는 통합적 특징, 사후 치료적 성격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접근과 같은 특징이 있다(조희금 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목만 이수하여도 핵심과목 중 1과목, 기초이론 중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3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더불어 선택과목 4과목(필수-가족복지론, 선택-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여성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자원봉사론, 사례관리론)을 건강가정사 과목에 맞추어 듣게 되며 추가로 건강가정사 필수에 해당하는 3과목만 들을 경우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건강가정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교과목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의 자격만 갖추어도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기본으로, 가족이 생활하는 직접적인 생활환경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즉, 건강가정사는 가족관계 및 가족복지를 기반으로 가계경제와 가정생활, 가정자원관리(의식주)를 포함한 가정환경 전반과 가족법과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사의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건강가정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능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영역을 더욱 세분화 하여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여건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가정현장실습이 필수가 아니라 과목분류로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필수과목 5과목을 이수하면 굳이 건강가정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아도 건강가정사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관련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가정사업의 실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조희금 외, 2011). 이같은 건강가정현장실습을 거치지 않고 건강가정사를 취득하는 것은 건강가정사의 자질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 건강가정사와 유사한 기타 자격(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청소년 상담사 등)을 살펴보면 실습 혹은 연수는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가정실천현장과 건강가정의 이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내담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건강가정현장실습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가정사의 자격등급 및 자격 취득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건강가정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을 발행하고 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확한 건강가정사의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건강가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을 미친다. 따라서 건강가정사의 자격증을 발행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등급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가족위기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 뿐 아니라 사전개입을 통하여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다. 법 제26조와 31조의 규정에서도 상담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사 1급 등은 건강가정사업의 관리자로서, 사업총괄 및 위기상당능력을 갖춘 자로, 건강가정사 2급은 중간실무자로서 사업개발 및 분석, 네트워크와 실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건강가정사 3급은 실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 초기 면접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등급을 분류함으로써 사·도 및 사·군·구 센터에 등급별 건강가정사의 수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정생활전반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전문지식에 기반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